

< 중소기업 계약학과 >

2025학년도 전기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석사과정

신입학생 모집요강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1. 모집 단위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과정	수업연한	수업진행	모집인원
ICT융복합 내진·초고층공학과	석사학위과정 (재교육형)	2년 (4학기)	토요일	20명

※ 재교육형 : 참여기업에 입학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이수하는 제도를 말함.

2. 지원 자격

구분	내용	참여기업 선발 제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1(3천억 미만), 중견기업2(3천억 이상)로 나누어 지원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 비율이 각각 40%와 0%로 상이함(담당자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등기이사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이 가입된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함.)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대표자. (단,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전액 부담해야 함.) 4년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3. 등록금 및 부담금(재교육형)

○ 등록금 지원 및 부담 내용 : 2024년 정부 고시 기준등록금은 3,020,000원 임.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지에 따라 소폭 변동, 추후 공지)

기업구분	교육비(등록금)			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참여학생	
중소기업	65%	17.5% 이상	17.5% 이하	100% (3,020,000원)
중견기업1	40%	30% 이상	30% 이하	
중견기업2	0%	50% 이상	50% 이하	

※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은 매학기 학생 1인당 50만원의 대응자금(학과발전기금) 별도 부담

※ 기업·학생 간 협의에 따라 민간부담금 전액 기업 부담 가능 (3자계약서에 표기)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원서접수	2024.11.1(금) ~ 2024.12.9.(월)	※ 진학사(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사진파일 및 결재 필요) 후, 입학지원서 및 체크리스트 컬러 출력 → 서명 →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보낼 곳 : (우)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제2공학관 104호 단국대학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석사과정) 담당자 앞
전형일시 및 장소	2024.12.14.(토) 10:00~ (예정)	※ 전형 방법 : 서류(50%), 면접(50%) ※ 전형 장소 : 본교 제2공학관 110호(면접실) 본교 제2공학관 105호(대기실)
합격자발표	2024.12.20.(금)	※ 본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금납부	2025년 1월 중	※ 본교 지정 은행 계좌에 납부(추후 안내)

5. 우선 선발 대상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6. 등록금 부담 추가 경감 대상자

-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한다.
 - 매학기 개시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및 자격 유지 근로자

-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 한다.
 -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
 -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계약학과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추가 장학금 및 기타 특전

- 매학기 성적상위 25%에 해당하는 인원은 참여학생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50만원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
- 공학석사(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전공) 학위를 수여하며, 본 대학교 본 학과 박사 과정에 응시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5% 추가 지원

8. 강의 개설 요일 및 시간

- 토요일 (학과 운영 상황 또는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교시 : 09:00~11:30 / 중식 : 11:30~12:40 / 2교시 : 12:40~15:10 / 3교시 : 15:20~17:50

9. 유의 사항

- 지원자 유의 사항
 -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의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입학 직전 퇴직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입학 취소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 취소, 제적 처리 및 지급되었던 보조금 환수 조치 (다만, 산업체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산업체로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형료 환불 및 제출 서류 반환 불가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재직 여부 확인

- 입학일 전일 기준 재직 확인 서류를 다시 제출
- 재학 및 졸업 후 최소의무근무기간(1년) 동안 매 학기 개시 전 재직 확인 서류 제출

○ 보증보험증권 제출

- 합격자는 매 학기 정부보조금 신청 전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 원서접수

→ 인터넷 지원사이트 진학어플라이(<http://jinhakapply.com>)를 통해 접수(사진파일 및 결제 필요) → 입학지원서 작성 후, 입학지원서 및 체크리스트 출력 → 입학지원서에 서명 → 체크리스트 확인 및 부착 →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접수 확인

문의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제2공학관 104호 단국대학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석사과정) 담당자 앞 (우편 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사무실 : 031-8005-2266 / 휴대폰 : 010-4406-1713 이메일 : supertall2017@naver.com
----	--

11. 구비서류 및 전형료

구 비 서 류	수량	비 고
입학지원서 (진학사를 통해 접수)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학사 통해 접수, 출력 후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비(수험료) : 70,000원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 ☞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서류도 함께 제출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합격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다시 제출)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분을 환산 ☞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 전 서류도 함께 제출
참여기업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원본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 사업자 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 http://sminfo.smba.go.kr/er/er/EER003R1.do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만 해당)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 1부 http://minwon.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MENU_WBMCB 사업장 로그인 후 사업장 적용 통보서에서 발급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및 증빙자료 1부(첨부양식)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원본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제출 재직증명서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 http://www.4insure.or.kr ☞ 개인회원 로그인 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1부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 NTS에서 발급 우선선발 및 등록금지원 우대 대상자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첨부양식)
3자 계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원본 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협의 하에 3부 작성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록금 부담비율 반드시 기재 (기업 17.5% 이상, 학생 17.5% 이하로 작성하며 총합이 35%가 될 수 있도록 작성) 의무근무기간 기재(최소 1년은 의무, 추가 기간은 협의/선택)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 서명, 반드시 간인 후 3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붙임】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체크 동의자 성명 기입 서명 후 제출
등록금 잔액처리 동의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액처리 동의서 원부 1부 제출
이력서 및 학업계획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제출

입 학 지 원 서

2025학년도<전기>

(진학사 지원 시 본 페이지 생략 / 진학사 지원서로 출력, 서명 후 제출)

수험번호	(진학사 접수 시 자동 부여)
------	------------------

지원 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 대학원	지원 학과	ICT융복합 내진·초고층공학과	지원 전공	ICT융복합 내진·초고층공학전공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병역사항	미필 . 현역 . 면제 . 예비역 . 여성	
	영문		E-mail		
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택)	(직장)	(핸드폰)		
경 력 사항 (수상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책(직급)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현재				
학 력 사항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졸업		
	년 월 ~ 년 월		졸업	학위등록번호	
	년 월 ~ 년 월		졸업	학위등록번호	
자격증 취득종별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본인은 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 귀하					
				<사진 부착란> (진학사 지원 시 파일로 업로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대표자연락처		대표자이메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 업 규 모	<input type="checkbox"/> 중 소 기 업 <input type="checkbox"/> 중 견 기 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 준 산 업 류	
자 본 금	백만 원	매 출 액	백만 원
4 대 보 험 부 가 입 여 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 근 로 자 수	명
업 무 담 당 자	부서명		연 락 처
	성 명		이 메 일
참 여 회 망 자 근 로 자	성 명		지 원 학 과
	성 명		지 원 학 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ba.go.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6.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및 증빙자료 1부(첨부양식)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단국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예, 아니오)

2. 신청일 현재「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가?

(예, 아니오)

(부채총계 : / 자본총계 : / 부채비율 : %)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증빙자료 : 최근 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지 원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직기간 (개월수)	년 월 일 ~ 현재 ()
직 위		담당업무	

<추천사유>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단국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3. 원천징수영수증 1부(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 4. 우선선발 및 등록금 지원 우대 대상자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첨부양식)

대표자 : (인)

단국대학교 총장 귀하

우선선발 및 등록금 지원 우대 대상자 확인서

학 생 명	학 생 연 락 처		
우선선발 대상자 여부 확인 (✓)			
확인 문항	예	아니오	
1. 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 참여자입니까?			
2. 귀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입니까?			
3. 귀하는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입니까?			
4. 귀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입니까?			
5. 귀하는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6. 귀하는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또는 단기복무 간부입니까?			
7. 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8. 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9. 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10. 귀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등록금 지원 우대 대상자 여부 확인 (✓)			
확인 문항	예	아니오	
1. 귀하는 매학기 개시일(3.1, 9.1)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가입 및 자격 유지 근로자입니까?			
2. 귀하는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입니까?			
3. 귀하는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과제에 참여한 근로자입니까?			
4. 귀하는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계약학과 상급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근로자입니까?			
5. 귀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까?			
6. 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7. 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8. 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9. 귀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입니까?			

* 증빙서류(내일채움공제 증권 사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 확인 가능 서류) 첨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주관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 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25년 2월 25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안 순 철	(서 _____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_____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_____ 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주관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 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25년 2월 25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안 순 철	(서 _____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_____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_____ 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등록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65%	%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주관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 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25년 2월 25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단국대학교	총 장	안 순 철	(서 _____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_____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_____ 명)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단국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주관대학(단국대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참여학생)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단국대학교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기업/학생) 잔액 처리 동의서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기업/학생) 잔액에 대한 잔액 처리 방침에
동의를 구합니다.

발생사유 :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발생

처리방침 : 각 학생과 기업에 환수해야 할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학교 운영비로 귀속

20 년 월 일

위의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서 명)

“참여학생” ○ ○ ○(서 명)

단국대학교 총장 귀하

사진

이 력 서

수험번호

(지원서와 동일하게 기입)

지원 과정	신입학(석사) - 일반전형		지원 학과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계약학과]		지원 전공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	
성명			한자			주민번호	-	
주 소	주택					전화	- -	
	직장					전화	- -	
기 본 학 력	학교명	기간(부터~까지)	전공		학위	성적	소재지	
						/100		
						/100		
추 가 학 력						/100		
						/100		
경 력 사 항	기관 및 업체명		기간(부터~까지)	직책 또는 직급		발령청		
연 구 실 적	발행년도	논문 및 저서명(기타 연구실적)					발행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학업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자기소개>

<지원동기>

<연구계획>

<졸업 후 계획>